

#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시청자평가원 운영내규

제정 2014년 10월 1일

개정 2017년 3월 31일

## 제1조(목적)

이 내규는 방송운영 및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평가원 평가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여 시청자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(선임)

①시청자위원회는 평가원 선임 시에 후보자의 전문성, 시청자 대표성, 전문분야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. 또한, 후보자 선정 시 연령과 성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관점을 가진 시청자평가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②신임 평가원이 선임되면, 해당 평가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임무·역할·보수·법적 근거를 포함한 시청자평가원제도를 해당 평가원에게 설명한다.

## 제3조(해임)

시청자평가원이 임기 중 품의를 손상하거나 방송사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, 또는 본 내규 제5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는 경우 시청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.

## 제4조(임기)

시청자평가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연임 결정 시에 반복 선임으로 인하여 비평의 다양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고려한다.

## 제5조(결격사유)

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평가원을 위촉함에 있어 다음 각 사유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하지 않는다.

1. 정당법에 의한 당원

2.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없는 자
3.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에 (예비)후보자로 등록한 자
4. 공무원(교육공무원 제외)
5. 해당 방송사의 임직원 및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6. 타 방송사 시청자위원회 위원 및 시청자평가원으로 활동 중인 자
7.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

#### 제6조(직무)

- ①시청자평가원은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방송운영 및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 의견을 진술한다.
- ②시청자평가원은 시청자들의 권익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시청자의 의견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한다.
- ③시청자평가원은 시청자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청자위원회에 참석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.

#### 제7조(운영)

- ①시청자평가원의 직무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.
- ②시청자평가원은 방송사업자가 작성한「시청자평가원 월간보고서」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정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시청자평가원으로부터「시청자평가원 월간보고서」의 정정 또는 보완 요구를 받았을 경우 이를 수용한다. 다만, 정정 또는 보완 요구사항이 위법·부당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.
- ④「시청자평가원 월간보고서」를 시청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

#### 제8조(활동비)

시청자평가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시청자평가원 활동경비를 매월 지급하며, 예산 범위 내에서 기타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이 내규는 201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